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67

발의연월일: 2024. 11. 5.

발 의 자: 송석준·김선교·조경태

이종배 • 유상범 • 박대출

곽규택 · 강대식 · 김예지

윤한홍 • 박정하 의원

(11인)

제안이유

2007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17년이 지났지만 유권자의 외면으로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으며, 덩달아 후보자의 교육정책에 대한인지도도 낮아 교육감 선거를 통한 교육 자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게다가 과도한 선거비용 지출과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 난무하는 등 각종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음.

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교육사무는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견해가 다른 경우 대립과 반 목으로 교육사무의 혼란을 야기하고, 효율적인 교육정책을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교육감 선거제를 개선하여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 메이트로 선거를 치르도록 하되, 교육감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두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라는 헌법의 이념을 살려 교육자치와 지방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방교육과 지방행정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지방교육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현행 교육감 선거제를 시·도지사와 런닝메이트제로 개선함(안 제 22조·제6장 및 제8장 삭제).
- 나. 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할하는 자이므로,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 지역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의 자격으로 현행법상 해당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라는 것과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를 위해 직접적인 정당 개입을 제한할 최소한의 장치로서 1년간 당적 보유 금지라는 자격요건은 유지함 (안 제24조제1항).
- 다. 교육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을 기존의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함(안 제24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52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교육감의 임명) ① 시·도지사(시·도지사 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직선거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지 명한 교육감후보자(이하 "교육감후보자"라 한다)를 교육감으로 임명 하되,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시·도지사는 교육감(교육감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사망, 사퇴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후임자를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

제23조제2항 중 "당선"을 "임명"으로, "임기개시일"을 "임명일"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을 각각 "5년"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삭제한다.

제24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직선거법」 제195조 및 제200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때

- 5. 교육감을 임명한 시·도지사의 임기가 만료된 때
- 6.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제6장(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및 제50조의2) 및 제8장(제59조)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교육감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이 적 용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교육감의 선거) 교육감의	제22조(교육감의 임명) ① 시·도
선거에 관하여는 제6장에서 따	지사(시・도지사 당선인을 포
<u>로 정한다.</u>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는 「공직선거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명한 교육감후
	보자(이하 "교육감후보자"라 한
	다)를 교육감으로 임명하되, 정
	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시・도지사는 교육감(교육
	감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을 포
	함한다)이 사망, 사퇴 또는 퇴
	직한 경우에는 후임자를 시ㆍ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
제23조(겸직의 제한) ① (생 략)	제23조(겸직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이 <u>당선</u> 전부터 제1	② <u>임명</u>
항의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u>임기개시일</u> 전일에	<u>임명일</u>
그 직에서 당연 퇴직된다.	,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①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	2

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u>3년</u>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u>3년</u>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 2. (생략)

제24조의2(교육감의 소환) ① 주 <삭 제> 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 표사무는 제44조에 따른 선거 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 ③ 교육감의 주민소환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시·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할 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법에서 준용하는

<u>5년</u>
<u>5년</u>
·.
1. • 2. (현행과 같음)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 으로 본다.

- 제24조의3(교육감의 퇴직) 교육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 된다.
 - 1. (생략)
 -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지방 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 나,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지거 | 나 합쳐진 경우 외의 다른 사 유로 교육감이 그 지방자치단 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함으로써 피선거권이 없 게 된 때를 포함한다)
 - 3. 정당의 당원이 된 때
 - 4. (생략)

<신 설>

<u><신</u> 설>

제6장 교육감선거 제43조(선출) 교육감은 주민의 보 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44조(선거구선거관리) ① 교육 | <삭 제>

제24조의3(교육감의	퇴직)

- 1. (현행과 같음)
- 2. 「공직선거법」 제195조 및 제200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사유 가 발생한 때

<삭 제>

- 4. (현행과 같음)
- 5. 교육감을 임명한 시·도지사 의 임기가 만료된 때
- 6.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u><삭 제></u>

<삭 제>

감선거에 관한 사무 중 선거구 선거사무를 수행할 선거관리위 원회(이하 "선거구선거관리위 원회"라 한다)는 「선거관리위 원회법」에 따른 시·도선거관 리위원회로 한다.

② 교육감선거의 선거구선거관 리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 법」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선거구) 교육감은 시·도 <삭 제> 를 단위로 하여 선출한다.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 <삭 제> 지 등) ① 정당은 교육감선거 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② 정당의 대표자・간부(「정 당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 •간부를 말한다) 및 유급사무 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 · 반대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선거관 여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으

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할 수 없다.

③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 •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 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 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 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은 선거일 전 90일(제49조제1
항에서 준용되는 「공직선거
법」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을 말한다)까지 그 직을 그
만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감선
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
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 속 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u><삭</u> 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제48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 <삭 제> 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 보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하 며, 후보자의 성명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거하여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 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②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 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을 현장에 출석시켜 추첨으로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되, 그 추첨 을 시작하는 시각까지 후보자 나 그 대리인이 현장에 출석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 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그가 지명한 사람이 해당 후보 자를 대리하여 추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는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 · 시 · 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 거구를,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 특별자치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 를 말한다)별로 후보자의 투표 용지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 정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바 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결정한다.

- ④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 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 용지에 해당 후보자의 성명은 그대로 둔다.
- ⑤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
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

<삭 제>

<u>0조까지, 제52조,</u>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 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 까지, 제61조, 제62조부터 제74 조까지, 제79조부터 제82조까 지, 제82조의2, 제82조의4부터 제82조의7까지, 제85조, 제86조 (제2항제2호 단서・제3호 및 제6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87 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8조의 2, 제109조부터 제122조까지, 제122조의2, 제135조(제1항 단 서는 제외한다), 제135조의2, 제146조, 제146조의2, 제147조 부터 제149조까지, 제149조의2, 제151조부터 제159조까지, 제16 1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66조 의2, 제167조부터 제186조까지, 제191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1 1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19조 부터 제262조까지, 제262조의2, 제262조의3. 제263조부터 제265 조까지, 제265조의2, 제266조부 터 제270조까지,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1조의2, 제272조, 제272조의2, 제272조의3, 제273 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7조의 2, 제278조, 제279조 중 시·도 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의 벌칙 외의 규정 중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규정에 대한 벌칙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 법」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 제5호 중 "증명서류"는 "증명 서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본다.
- 2. 「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

- 제5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로 본다.
- 3.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제4호 단서 중 "정당의 당원 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국회의원의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 4.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 2항제2호·제3항 전단 및 제4 항제1호의2 중 "증명서류"는 각각 "증명서류 및 「지방교 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 명서류"로 본다.
- 5.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4항제2호 중 "제53조제1항부

- 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으로 본다.
- 6. 「공직선거법」 제61조제5항 중 "공중위생영업소"는 "공중 위생영업소, 국회의원 및 지 방의회의원의 사무소와 「정 치자금법」에 따른 국회의원 후원회의 사무소"로 본다.
- 7. 「공직선거법」 제65조제9항 중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 ·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으로 본다.
- 8.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 비서관·비서관 및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은 "공무 원"으로 본다.
- 9.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

 항을 준용하는 경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교육감

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직무상의 행위,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방법 외의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수 없다.

- 10.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 항제2호자목 본문 중 "상장 (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은 "상장(부상은 제외하되, 각급 학교의 졸업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으로 본다.
- 11. 「공직선거법」 제14장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2조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교육감선거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감선거와 공직선거를 동시선거로 본다.
- 12. 「공직선거법」 제11조제2 항·제3항, 제135조의2제2항 ·제4항, 제262조의2제1항, 제

264조, 제266조제1항, 제267조 제2항, 제268조제1항 본문, 제 272조제1항 · 제5항 전단 · 제7 항 전단, 제273조제1항의 "죄" 또는 "범죄"에는 "「지 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 59조에 규정된 죄"를 각각 포 함하며, 「공직선거법」 제26 0조제1항 중 "제259조"는 "제 259조, 「지방교육자치에 관 한 법률」 제59조"로 본다.

13. 「공직선거법」 제18조제2 항, 제269조 본문, 제270조, 제270조의2제1항의 "선거범" 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59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자"를 포함한다.

14. 「공직선거법」 제271조제1 항 전단, 제271조의2제1항, 제 272조의2제5항, 제272조의3제 1항·제2항·제4항의 "이 법" 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제50조(「정치자금법」의 준용) <삭 제>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

자금법 의 시 · 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의2(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 <삭 제> 설치) ① 이 법에 따라 교육감 으로 당선된 사람(이하 "교육 감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직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 한을 갖는다.

- ② 교육감당선인을 보좌하여 교육감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 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당 시 ·도 교육청에 교육감직인수위 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 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③ 인수위원회는 교육감당선인 으로 결정된 때부터 교육감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 까지 존속할 수 있다.
-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현황 파악
- 2. 해당 시·도의 교육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 3. 그 밖에 교육감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부위원장 1명 및 10명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위원장·부위 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교육감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 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교육감직의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그 밖에 인수위원회의 조직 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

①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 원장·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 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59조(벌칙) 제46조를 위반한 자 < 삭 제>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삭 제></u>